

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

1. 개정이유

2020년 10월 20일 개정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」이 공포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의 항공구조구급대의 명칭을 119항공대로 변경하고,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「감염병 환자 등의 통보대상, 방법, 절차 및 내용」 개정과 관련하여 감염병 발생 통보 근거를 마련하고 통보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항공구조구급대를 119항공대로 명칭 변경함(안 제9조, 안 제10조, 제25조)
- 나. 제20조의2(감염병 발생 통보) 조항 신설(안 제20조의2)
- 다. 질병관리청장과 의료기관의 장이 통보해야 하는 감염병 발생통보서를 신설하여 규정(안 별지 제10호 서식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제목, 제9조제1항, 제9조제2항, 제9조제3항, 제10조 제목,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25조 제목 및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항공구조구급대”를 각각 “119항공대”로 한다.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의2(감염병의 발생 통보) 질병관리청장과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감염병 발생 정보를 소방청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감염병 발생 통보서

수신자: []소방청장, []() 시도 소방본부장

[환자의 인적사항]

성명	주민(외국인)등록번호
(만 19세 이하인 경우 보호자 성명)	성별 []남 []여
전화번호	휴대전화번호
주소	
[]거주지 불명	[]신원미상
직업	

[감염병명]

제1급	[]에볼라바이러스병	[]마버그열	[]라싸열	[]크리미안콩고출혈열
	[]남아메리카출혈열	[]리프트밸리열	[]두창	[]페스트
	[]탄저	[]보툴리눔독소증	[]야토병	
	[]신종감염병증후군(증상 및 징후:)			
	[]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(SARS)		[]중동호흡기증후군(MERS)	
	[]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		[]신종인플루엔자 []디프테리아	
제2급	[]결핵(結核)	[]수두(水痘)	[]홍역(紅疫)	

[감염병 발생정보]

발병일	년 월 일	진단일	년 월 일	신고일	년 월 일
확진검사결과 []양성 []음성 []검사 진행중 []검사 미 실시					
환자 등 분류 []환자 []의사환자 []병원체보유자 []검사 거부자 []그 밖의 경우					
비고(특이사항)					

[신고의료기관 등]

요양기관번호	요양기관명
주소	전화번호

[기타 정보]

국적(외국인만 해당합니다.)	
환자의 소속기관명	환자의 소속기관 주소
추정 감염지역 []국내	
[]국외(국가명 :)	/체류기간: ~ /입국일: 년 월 일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9조(<u>항공구조구급대</u> 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)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·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<u>항공구조구급대</u> 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「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」 및 「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」에 따른다.	제9조(<u>119항공대</u> 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) ① ----- ----- ----- <u>119항공대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에 설치하는 <u>항공구조구급대</u> 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하되, <u>항공구조구급대</u> 에 두는 항공기(이하 “항공기”라 한다)는 3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.	② ----- ----- <u>119항공대</u> ----- ----- ----- <u>119항공대</u> ----- ----- -----.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<u>항공구조구급대</u> 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	③ ----- ----- <u>119항공대</u> ----- ----- ----- --.
제10조(<u>항공구조구급대</u> 의 출동구역) ① <u>항공구조구급대</u> 의 출동구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	제10조(<u>119항공대</u> 의 출동구역) ① <u>119항공대</u> ----- -----.
1. 소방청에서 설치된 경우: 전	1. -----

국 2. 소방본부에 설치된 경우: 관 할 시·도 ②·③ (생략) <신설>	-- 2. ----- ----- ②·③ (현행과 같음) <u>제20조의2(감염병의 발생 통보)</u> <u>질병관리청장과 의료기관의 장은</u> <u>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감염병</u> <u>발생 정보를 소방청장 등에게 통</u> <u>보하여야 한다.</u>
제25조(<u>항공구조구급대 소속 조종사 및 정비사에 대한 교육훈련</u>) ① 법 제25조에 따른 교육훈련 중 <u>항공구조구급대 소속 조종사</u> 및 정비사에 대한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1. 조종사 가. 비행교육훈련 1) 기종전환교육훈련(신규 임용자 포함) 2) 자격회복훈련 3) 기술유지비행훈련 나. 조종전문교육훈련 1) 해상생환훈련 2) 항공안전관리교육 3) 계기비행훈련 4) 비상절차훈련	제25조(<u>119항공대 소속 조종사 및</u> <u>정비사에 대한 교육훈련</u>) ① -- ----- -- <u>119항공대</u> ----- ----- -----. 1. ---- 가. ----- 1) ----- ----- 2) ----- 3) ----- 나. ----- 1) ----- 2) ----- 3) ----- 4) -----

5) 항공기상상황관리교육	5) -----
6) 그 밖의 항공안전 및 기술향상에 관한 교육훈련	6) ----- -----
2. 정비사	2. ----
가. 해상생환훈련	가. -----
나. 항공안전관리교육	나. -----
다. 항공정비실무교육	다. -----
라. 그 밖의 항공안전 및 기술향상에 관한 교육훈련	라. ----- -----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소방청 항공통신과	
연 락 처	(044) 205 - 7701
소방청 코로나19긴급대응반	
연 락 처	(044) 205 - 7721